

예비전력의 효시(嚆矢) 호국군(護國軍)의 성격에 관한 연구

박 종 현*

요 약

호국군은 비록 짧은 역사였지만 대한민국 예비군제도의 효시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호국군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나마도 진행된 연구는 역사적 관점에서 단편적인 서술에만 국한되어 왔고 호국군의 성격을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국군이 존재했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본 다음 법적·제도적, 군사적, 정치적 관점의 새로운 시선에서 호국군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호국군은 법률적 지지를 받으면서 전시에 대비한 효율적인 제도로 탄생하였다. 그리고 선진국형 모병제도인 지원병제를 채택했다는 점, 호국군만의 별도 사관학교를 통해 장교를 양성했으며 후방지역작전에 기여했다는 점은 군사적 측면에서 높이 평가된다. 반면, 호국군을 창설하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비군사단체가 결탁하였다는 점은 부정적이다. 끝으로 본 연구를 계기로 6.25전쟁 이전에 존재했던 예비전력에 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 National Guard the root of the reserve power

Jong-Hyun Park*

ABSTRACT

Although the Korea National Guard(KNG) has a short history, it has a great meaning in that it is the first of the Korean reserve forces system. Research on the KNG has been passively conducted so far. Even so, the research conducted was limited to a fragmentary description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and did not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KNG. Therefore, in this study, after examining the background of the times when the KNG existed, we tri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KNG from a new perspective from legal, institutional, military, and political perspectives. In summary, the KNG was born as an efficient system in preparation for war while receiving legal support. In addition, the adoption of the volunteer army system, a recruiting system of advanced countries, the fact that officers were trained through a separate military academy unique to the KNG, and that they contributed to rear area operations are highly evaluated from a military standpoint. On the other hand, it is negative that politicians and non-military groups colluded from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KNG. Finally, with this study as an opportunity, it is hoped that research on the reserve force that existed before the Korean War will become more active.

Key words : Korea National Guard(KNG), reserve forces system, politicians, non-military groups

접수일(2022년 11월 29일), 수정일(1차: 2022년 12월 11일,
2차: 2022년 12월 25일), 게재확정일(2022년 12월 31일)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1. 서론

대한민국에는 6.25전쟁 이전부터 호국군(護國軍; Korea National Guard)의 이름으로 예비군 조직이 존재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전력에 관한 연구에서는 향토예비군이 창설된 시기(1948. 4. 1)를 출발점으로 보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기준점을 호국군의 창설에 두고 있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호국군이 비록 짧은 역사를 지녔지만, 법적으로 제도화된 대한민국 최초의 예비군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군(建軍)작업이 한창이던 1948년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특히, 북한의 동태는 늘 긴장감을 고조시켰고 남한 내부에 뿌리 내린 남로당을 비롯한 좌익세력들은 국가 시책에 반대하는 선동을 일삼았다.

이러한 가운데 강력한 군대의 보유는 필수적이었으나.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 가지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충분한 정규군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기에 그 대책으로 호국군의 창설을 검토하였다.

호국군에 관한 선행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정옥(2010)은 6.25전쟁 이전에 시행한 예비군제도의 한 축으로 호국군을 평가하였고, 창설부터 해체까지 일반적인 수준에서 논하였다. 임송자(2015)와 노영기(2020)는 호국군을 여순사건의 군사적 산물로 바라보는 시대적 시각이었으며 윤시원(2020)은 호국군의 해체를 군사적 가치의 소실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정책적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몇 가지 연구 자료에서는 호국군을 군사학적 관점에서만 한정하여 폭넓게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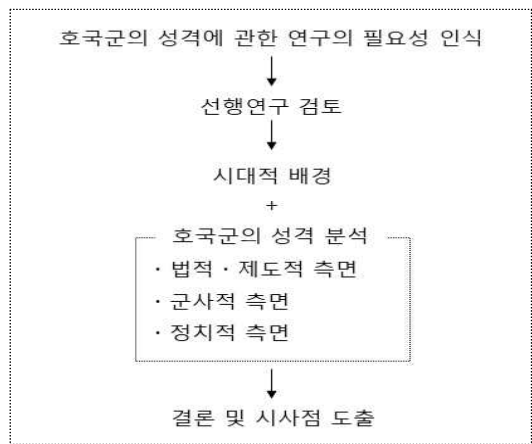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연구들은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호국군의 창설과 해체과정에 대한 법적·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둘째, 하나의 군사조직이 비록 잠시나마 존재했지만 호국군의 군사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명확하지 않았다. 셋째, 호국군은 정치적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았다고 하였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국군의 내면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호국군이 창설되었던 시기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법적·제도적, 군사적, 정치적 관점에서 호국군을 분석하는데 주력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호국군 창설에 관한 정책결정과정은 국회의회의록과 신문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논리적 근거를 찾고자 관련 논문과 법령 등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진행을 위한 분석의 틀은 다음(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분석의 틀

끝으로 호국군을 'Korea National Guard(KNG)'로 표기하여 미국의 주방위군(National Guard)과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였다.

2. 시대적 배경

2.1 남한 내 좌익세력들의 선동활동

해방 이후 남한의 치안상황은 불안정하였다. 미군이 진주하기 전까지 남한의 치안은 공백에 가까웠으며 아직 일본 경찰이 무장해체를 하지 않은 채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1945년 9월 초, 남한에 진주한 미군의 최우선 과제는 조기에 치안을 회복하고 민심을 바로잡는 것이었는데 그 첫 번째 과제가 일본인이 소유했던 토지의 정리 문제였다. 그러나 소련은 이미 북한 지역에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민심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를 인지한 미군정은 토지문제를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1].

더구나 남한에 잔류하고 있던 좌익세력들은 북한의 토지개혁을 선전활동에 이용하였다. 즉,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미군의 대처를 자본주의의 모순이라 비방하며 남한 국민들을 자극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남한 사회는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물가는 계속해서 치솟았으며 노동자들의 임금도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등 심각한 인플레이션(inflation)에 직면하였으므로 국민들은 경제적 빈곤에 직면한 상태였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은 좌익세력들이 활동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었으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여 반국가세력을 확장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특히, 사회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9월 총파업과 10월 항쟁이 대표적인 그들의 모사(謨士)였다.

한편, 남로당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군을 와해시키고자 하는 공작을 도모하였는데 이들은 이미 국방경비대가 창설되면서 군 내부로 대거 유입되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당시 제주 4.3사건 진압 출동 명령에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킨 여순사건(1948. 10. 19)이며 결국 이 사건은 숙군(肅軍)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남로당이 군 내부에 쉽게 침투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는 미군정이 국방경비대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내세워 사상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2 숙군작업과 애국청년단체의 가입

미군정의 무분별한 모병(募兵)으로 인해 남로당 세력들은 손쉽게 국방경비대로 잠입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미온적인 대처는 훗날 국군의 반란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일부 부대에서는 자체적으로 좌익세력을 색출, 제거하기도 하였다.

국방경비대 제1연대는 비록 소극적인 숙군을 진행하였지만 남로당 출신 장교 18명을 색출하여 사상범으로 구금하였다. 이처럼 여순사건 이전까지 부대별로 숙군의 노력은 있었으나 발본색원하지는 못하였다.

그나마 여순사건을 겪은 이후에야 대대적인 숙군작업에 들어갈 수 있었다. 당시 육군 46,251명 중 약 7%에 해당하는 남로당 출신을 색출하였으며 군사재판에 회부된 자는 장교 326명, 사병 1,170명이었다[2].

1949년 3월 3일 숙군작업이 종료되면서 군은 모병

과정에서부터 사상검증을 시작하였다. 이 시기부터 애국청년단체들은 본격적으로 군과 인연을 맺게 된다.

당시 대한민국에 자생한 애국청년단체는 미군정에 게 인정받은 준군사조직이었고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개입하면서 이권을 취득하였는데 특히, 건국 이후에도 국군 창설에 개입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애국청년단체를 신뢰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군 입대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신원보증을 책임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애국청년단체 책임자가 추천하는 자에 대해서는 우선 선발하도록 모병 방침을 변경하였다[3].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군을 정화시키는데 일조하였으나 애국청년단체가 권력기관의 절대적인 비선 세력으로 전락해버리는 부작용도 동반하였다. 즉, 여순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또다시 군의 재편 과정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2.3 주한미군의 철수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과 대립하고 있던 대한민국에는 안보를 위한 현실적인 문제였다. 사실상 6.25전쟁과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이래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 거의 모든 무기와 장비를 전적으로 미군에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유사하듯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안보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주한미군은 대한민국과 전통적 안보 협력관계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포괄적 안보협력관계까지 발전하였다.

6.25전쟁 이후 주한미군에 대한 철수 문제는 과거 미국의 카터 행정부(Carter Administration)에서 거론된 적은 있었으나 대한민국의 여론과 미 상원 의원들의 절대적인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4].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더 이상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명분은 희박해졌다. 더구나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를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1949년 6월 30일까지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를 결정하였고 대신 「대한군사기본계획」에 따라 국군의 전투력이 자체방어가 가능한 수준까지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는 소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대한군사기본계획」을 함축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군에 필요한 소요장비와 무기의 지원만 지

원하고 둘째, 군사 분야의 조언과 자문을 위해 주한미군군사고문단(KMAC;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을 둔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자주국방을 위한 군사력을 확보하고자 적극적인 대안을 수립하고 있었다. 공고롭게도 이 시기는 여순사건과 맞물려 있었기에 더욱 절실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이 제시한 「대한군사기본계획」에 충속하기 위해 국군을 증강하고자 하였으나 유사시 전력을 보강할 예비대의 확보도 시급하였다. 따라서 정규군 부대에 준한 군사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호국군이 검토되었다[5].

주한미군은 호국군 제도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1948년 9월 20일 국방부와 주한미군과의 정기 회담에서 주한미군군사고문단장이 이범석 국방부장관에게 미국의 주방위군(National Guard) 제도를 제안하였고 호국군이 그 결과물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3. 호국군의 성격

3.1 법적·제도적 측면

호국군 창설은 법률 제9호 「국군조직법」과 대통령령 제52호 「병역입시조치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먼저 「국군조직법」 제2조에는 “국군은 육군과 해군으로 조직”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육군은 정규군과 호국군으로써 조직한다.”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육군 정규군의 현역 병력에 준한다”라고 하였다[6][7].

그리고 「병역입시조치령」에서는 호국군의 모병과 복무 그리고 신분과 현역편입 규정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적 근거는 호국군이 국군조직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처럼 호국군의 창설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반면, 해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법률 제41호(1949. 08. 06)로 제정된 병역법과의 관계이다. 선행연구들은 병역법을 근거로 호국군이 해체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병역법 잡칙(부칙)이나 기타 조항에는 호국군의 폐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경과조치도 찾아 볼 수 없다.

둘째, 병역법 제3조의 병역구분, 제4조의 역종별 명칭, 제8조 취역구분 등 16개 조항에 호국군에 관련한 규정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병역법은 호국군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입법화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호국군의 해체에 관한 주장은 병사구사령부가 설치되면서 호국군사령부와 그 예하조직이 일시에 해체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병사구사령부는 병원(兵員)을 모병하고 관리하는 지금의 병무청과 같은 행정기관이다. 즉, 행정기관이 신설되었다고 해서 군대조직인 호국군이 해체된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봐도 무방하다[8].

따라서 호국군의 해체는 법적이나 제도적인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으며 단지 그 외적인 요인들이 작용했다고 귀결된다.

한편, 호국군은 제도적으로 미국의 주방위군을 모방하였다는 주장이 절대적이다. 물론 주한미군군사고문단장이 이범석과의 회담에서 최초로 제안했으나 사실적 근거로 보았을 때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았다. 즉, 일본 재향군인회의 성격도 가미되었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다.

일본 제국주의 재향군인회는 1910년 결성 후 이듬해 8월부터 전국단위로 조직되었다. 이 단체는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들로 구성된 반(半) 관변단체로서 조선인을 감시하는 역할에 주목적을 두고 결성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개인화기로 무장을 한 군사조직으로서 일본 경찰과 군을 증원하였고 필요시 이재민을 구제하고 치안유지활동을 보조하는 전형적인 예비전력으로서 역할도 수행하였다[9][10][11].

이러한 내용은 선행연구자들의 연구에서는 누락되어 있지만 당시 신문에 게재된 호국군의 모집공고사실적 근거를 대변하고 있다[12].

“호국장병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집에 응하여 때때로 훈련을 받는 것인데 말하자면, 미국의 예비군과 같은 것이며 일본의 재향군인파도 어느 점으로는 동일한 바가 있다.”

호국군의 창설을 논하던 시기는 비록 미군정의 영

향력이 절대적이었으나 일제강점기 36년이라는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잔재가 대한민국 전력증강의 필요성을 논하는 과정에서도 언급되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3.2 군사적 측면

국군은 1948년 국방경비대로부터 5개 여단 15개 연대에 편성된 50,490명을 인계받았다. 이후부터 병력확충계획에 따라 1949년 6월에는 8개 사단 23개 연대로 증강함으로써 겨우 10만 명을 유지하였다. 반면, 같은 시기 북한은 약 13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국군은 병력규모 면에서 상대적인 열세를 면치 못하였다.

북한의 인민군과 대등한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호국군의 창설은 필수적이었으며 전투예비병력을 보유한다는 것은 북한과 힘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군사적 대응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호국군은 창설단계에서부터 다음과 같은 신중성을 기하였다.

첫째, 호국군의 주둔지는 지원할 정규군 부대와 근접한 곳에 편성하였다. 즉, 유사시를 대비하여 평상시부터 정규군과 호국군이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였다.

<표 1>은 정규군을 중심으로 한 호국군부대의 주둔지 위치와 관할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호국군 주둔지 및 관할지역[13]

정규군 여단		호국군 여단		
부대	주둔지	부대	주둔지	관할지역
제1여단	서울	101여단	서울	서울·경기
제2여단	대전	102여단	대전	충남·전북
제3여단	대구	103여단	부산	경북·경남
제5여단	광주	105여단	광주	전남
제6여단	원주	106여단	청주	충북·강원

둘째, 정규군을 효과적으로 증원하기 위해 유사한 편제를 유지하였다. 호국군은 시·군·면 등 행정구역을 기본단위로 중대-대대-여단을 편성하고 여단과 연대는 3각 편제를, 대대 이하는 4각 편제로 하였고 여단과 연대 그리고 대대에는 일반참모와 특별참모 기능까지 편성하였다. 병력 규모 또한 1:1 개념을 적용하여 창설 당시 5만 명에서 해체 직전에는 10만 명으로 정규군과 대등한 수준이었다.

셋째, 사관학교를 통해 호국군 장교를 양성하였다. 장교는 전투의 승리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초급장교는 전투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이다. 이러한 중대함을 자각한 육군은 1949년 4월 1일 호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였다. 호국군 사관학교는 4기 1,026명의 호국군 장교를 배출하였다.

넷째, 호국군의 업무를 통제할 기구를 두었다. 육군은 국방부의 호국군 창설 계획안에 따라 육군본부에 호국군무실을 두었으며 연대(이하 편성담임연대)에는 호국군고문부를 설치하였다. 호국군무실은 호국군에 관한 총괄기구로서 중령급 장교를 부서장으로 보직하였고 호국군고문부는 위관급 장교를 고문부장으로 하여 편성담임연대로서 모병을 담당하고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업무를 관장하였다.

다섯째, 무기와 장비를 미군에 의존하였다. 이 부분은 1948년 8월 24일 대한민국 정부가 국군의 무기와 장비를 충당하기 위해 미국과 체결한 「군사안전에 관한 한미 행정협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 협정은 국군 건설에 필요한 인원 이외의 무기 및 장비를 미국이 전부 지원한다는 것인데 호국군 역시 국군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이 가능했다.

이와 같이 조직된 호국군은 비록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군사작전에 기여한 바도 크다. 당시 남로당 세력들은 여수 14연대와 대구 6연대의 반란사건의 주범이 되었고 6.25전쟁 이전까지 태백산과 소백산 그리고 지리산 등 전국 주요 산악지역을 은거지를 구축하여 활동하면서 요인암살, 통신시설과 철로 등 국가기반시설을 파괴하여 안보질서를 어지럽혔다.

특히, 38도선에 근접한 106여단 예하 108연대와 110연대는 오대산과 태백산 일대에서, 105여단의 115연대와 120연대는 경남 신불산 일대에서 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하였는데 지역정보에 밝은 호국군들은 매복과 수색정찰활동 등에서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또한, 주한 미군이 본국의 결의에 따라 1948년 9월부터 철수가 시작되었다. 그 동안 38도선 일부 중 미군이 담당하던 곳에 국군이 배치가 되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진지구축이 시작되었으나 국군은 교육훈련에 분주하였고 진지구축에는 주민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가운데 호국군 10개 연대가 1949년 6월부터 8월까지 38도선에 파견되어 진지축성을 지원하는 예비전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8].

하지만 호국군은 군사조직으로서 본질에 충실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체를 맞이하였고 이는 6.25전쟁 초기 많은 병력 손실을 입은 국군을 적시에 보충할 수 없었던데 기인한 것이다.

3.3 정치적 측면

이승만 정권은 정치기반이 빈약한 상태에서 불안한 출발을 하였다. 때문에 이승만은 자신의 정권을 보호할 지지기반 세력이 필요하였다. 그 중 하나의 대안이 애국청년단체들을 하나로 규합하는 것이었다.

이 애국청년단체들은 해방 이후부터 자생한 단체로서 독립국가의 군대건설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실 군사단체들이었다. 이들은 주로 광복군, 독립군, 일본육군사관학교, 학도병 등으로 구성되었고 미군정청에 등록된 단체만 해도 30여 개에 달하였다[14].

그러나 애국청년단체들은 이미 정치에 깊숙이 관여한 상태에서 여당과 야당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도 이승만은 애국청년단체 출신의 국회의원을 포섭하고 야당을 능가하는 세력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소장파 의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실현은 불가능하였다. 때마침 여순사건은 이승만에게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었다.

이승만은 먼저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좌익세력들을 발본색원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애국청년단체들을 이용하였다. 나아가 애국청년단체들에게 새로운 군사조직인 민병대를 조직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러한 제의는 군사조직에 준하여 활동하던 애국청년단체들에게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이승만은 민병대에 대한 구상안을 발표하였고 국회에서는 이를 구체화하고 동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당시 국회에서 이승만의 구상을 바탕으로 한 시국수습대책안은 아래와 같다[15].

“제1조 호국군은 애국청년단원 중심으로 5만 명 편성할 것”

“제2조 급반(今般) 편성되는 호국군은 순수한 애국청년으로 편성키 위하여 각 애국청년단(대청, 청충, 서청, 독청, 국청, 학련, 민족청) 대표자 7인과 국회 정부 사법 등에서 7인, 합계 약 14인 정도로 호국군편성최고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

“제3조 과거 군사 훈련 받은 단체 급 개인 우는 기타 애국청년단체는 호국군편성위원회의 심사로 호국군에 편입케 할 것”

“제4조 호국군을 편성 완료 후에는 전국 각 애국청년단체를

통합하여 호국청년동맹(가칭)을 조직하여 일정한 훈련을 받게 할 것”

“제5조 호국군과 호국청년동맹을 편성완료 후에는 어떤 명목으로든지 애국청년단체 결성 및 활동은 일천 용허치 말 것”

위의 내용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호국군의 중심에는 애국청년단체들이 있었다. 곧 통합된 애국청년단체가 호국군인 것이었다. 이러한 애국청년단체들은 정치적 비호아래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호국군의 강압적인 모병이었다. 당시 병역제도는 지원병제를 채택하고 있었고 호국군의 모병은 지역별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보니 지역별 애국청년단체들은 자연스럽게 모병활동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징병제가 아닌 이상 모병에는 많은 제한이 따랐기 때문에 모병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국민들은 거센 반감을 샀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애국청년단체 간의 알력다툼이었다. 이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대립으로 확산되었다. 이승만은 국무총리 겸 국방부장관인 이범석을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생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애국청년단체들 중 가장 세력이 컸던 조선민족청년단(이하 족청)의 총재가 이범석이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이승만을 지지하는 대한청년단(이하 대청)은 세력이 약하였다. 더구나 애국청년단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가칭 호국청년동맹의 정식명칭을 대한청년단으로 하였기에 족청계열의 반발은 심하였고 대한청년단 발단식이 끝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승만의 압력으로 족청은 강제 해산되었다. 이와 동시에 이범석도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며 이승만계열인 신성모가 국방부장관에 내정되었다[16].

따라서 이승만 계열이었던 신성모는 이범석에 의해 만들어지고 족청계열이 대부분인 호국군을 해체시키고 대청을 주축으로 청년방위대를 결성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호국군은 정치적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한계점을 드러낸 이유이다.

4. 결론 및 시사점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많은 고통을 겪었다. 특히, 북한에 대응할 강

한 군대를 육성하는 과정에서는 더욱 심한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탄생한 호국군은 전시에 가장 효율적으로 병력을 충원할 수 있는 제도였으며 오늘날 예비군제도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호국군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몇 가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제도적으로 지원병제를 채택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의 병력 수급 상황과는 다르지만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자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선진화된 모병 제도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시대를 맞아 병력 충원에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제도 또한 지원병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별도의 사관학교를 운영하여 장교를 양성하였다. 단순히 장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 초기 장교의 손실률을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는 1,026명의 호국군 초급장교는 6.25전쟁 중 3차에 걸쳐 640명이 현역으로 전환되어 전선에 투입되었다.

셋째, 국민들을 단합시키는 매개체가 되었다. 혼란한 시국에 동요되는 민심을 바로잡는데 기여하였다. 즉, 행정구역 단위로 제대를 편성하였으므로 자연스럽게 주민들 간의 결집을 유도할 수 있었다.

반면, 호국군의 긍정적인 면만 볼 수는 없다. 호국군이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과 제도적으로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오히려 호국군제도에 큰 오명을 남겼다.

지금까지 호국군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호국군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주력하였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호국군은 제도적인 측면과 군사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 예비군제도의 초석이 되었고, 국군조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확고히 다졌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국가의 군 조직이 정치적인 이유로 존폐가 결정되었다는 불편한 진실도 부정할 수는 없다.

본 연구를 계기로 호국군에 대한 관심과 시각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며 호국군의 뒤를 이은 예비군제도에 대해서도 기존연구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박명수, “1946년 미군정의 여론조사에 나타난 한국인의 사회인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40집, 제1호, p. 46, 2018.
- [2] 노영기, “국방경비대·육군의 세력 분포와 숙군”, 수선사학회, 제33권, p. 278, 2009.
- [3] 노영기, “여순사건 이후 한국군의 변화와 정치화”,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제100권, p. 36, 2020.
- [4] 조관행,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미 의회의 입장 변화에 관한 연구”, 군사, 제100호, p. 322, 2016.
- [5] 노경호, “주한미군철수와 방위태세”, 부산공업대학교 논문집, 제19권, p. 5, 1978.
- [6] 법률 제9호, 「국군조직법」, 1948. 11. 30 제정.
- [7] 대통령령 제52호, 「병역임시조치령」, 1949. 1. 20 제정.
- [8] 호국군사관학교총동창회, “호국군사”, pp. 26-53, 2001.
- [9] 海野幸徳, “我國傷病兵扶助の指導原理として綜合組織の創設(下)”, 朝鮮社會事業協會, Vol.19 No.3 pp. 31-32, 1941.
- [10] 早田伊三, “漢江未會有の水災に對する各國體の活動”, 朝鮮社會事業協會, Vol.3 No.8 p. 31, 1923.
- [11] 이나미, “국가형성기(1945-1960) 한국 시민사회 제도사: 사회영역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14권 제1호, p. 18, 2016.
- [12] 한성일보, “호국군모집요강”, 1948. 01. 18 기사.
- [13] 윤시원, “제1공화국기(1948-1960) 육군 예비전력 동원체제의 형성”, 군사, 제111호, p. 8, 2020.
- [14] 육군종합학교진우회, “실록, 六二五韓國戰爭과 陸軍綜合學校”, p. 32, 1995.
- [15] 국회회의록, “제1회-102호, 3. 시국대책에 관한 의결안”, p. 3, 1949. 11. 20.
- [16] 임송자, “여순사건과 시국수습대책위원회를 통해 본 정부와 국회의 갈등·대립”, 실록사학, 제35집, p. 304, 2015.

————— [저 자 소 개] —————



박 중 현 (Jong-hyun Park)

2003년 2월 서경대학교 문학사
2009년 2월 건양대학교 군사학 석사
2021년 2월 건양대학교 군사학 박사
현 재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군사학과 조교수

email : ktma3431@naver.com